

수신:경 제 부 장

수신:공정거래위원회출입기자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조찬회 강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와 경쟁정책

-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방향 -

○ 일시 : 2004.8.27(金) 07:20(50분)

○ 장소 :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目 次

<최근의 경제동향>

I. 전환기의 한국경제

II. 시장경제제도의 원리와 한계

III. 시장경제와 경쟁정책

1. 경쟁과 기업의 성장
2. 공정위의 역할
3. 정부의 경쟁정책 방향

IV. 주요 경쟁정책 과제

1.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성
2.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개선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의 조성
4. 소비자정책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

<최근의 경제동향>

- 금년들어 우리경제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
 - 2/4분기 실질GDP가 전년동기비 5.5% 증가하는 등 경기지표 개선
 - * 분기별 GDP성장률: ('03.1/4)3.7 → (2/4)2.2 → (3/4)2.4 → (4/4)3.9 → ('04.1/4)5.3 → (2/4)5.5
 - 1~7월중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82.5억달러이며(지난해 연간 무역 흑자 149.9억불), 외환보유고도 8월 15일 현재 1,707억불
 - * 수출증가율(전년동(월)기비, %) : ('03.2/4)14.4 → (3/4)15.9 → (4/4)25.6 → ('04.1/4)37.7 → (2/4)42.0 → (7)38.4
 - * 금년 1~7월 수출증가율이 주요 경쟁국인 중국(35.7%), 대만(25.9%), 싱가포르(23.9%), 일본(23.1%), 홍콩(14.5%), 미국(14.2%)보다 높은 38.4%를 기록
 - 2/4분기 이후 고용사정도 완만한 회복
 - * '04.7월중 취업자는 2,275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9만명 증가
- 전년 2/4분기 이래 지속되어온 내수의 감소추세가 금년 2/4분기에는 2.2% 증가로 반전되는 등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완화되는 추세
 - * 금년 2/4분기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의 성장기여율은 설비투자가 증가로 돌아선데 힘입어 5분기 만에 플러스(14.6%)를 기록하였고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85.4%의 높은 수준을 유지
 - 소비지출은 0.2% 증가하여 감소세를 멈추었고, 설비투자는 6.2% 증가하여 내수전체의 증가를 이끌었음
 - * 최종소비지출(전년동기비, %) : ('03.1/4)0.9 → (2/4)△0.8 → (3/4)△0.9 → (4/4)△1.1 → ('04.1/4)△0.6 → (2/4)0.2
 - *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 ('03.1/4)1.9 → (2/4)△0.6 → (3/4)△5.0 → (4/4)△2.4 → ('04.1/4)△0.3 → (2/4)6.2
 - 그러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하고 고유가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우리 경제의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
- 하반기에도 수출의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기술적 요인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I. 전환기의 한국경제

1.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 한국경제는 '60년대 이후 '80년대까지의 개발연대에 정부주도 하에 대기업집단 중심으로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을 달성
 - 한정된 요소를 특정집단에 집중 배분하여 주요 산업별 National Champion을 육성 → 개방된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시장경쟁 경험
 - 대내적으로 진입장벽, 카르텔 용인, 관세 및 무역장벽 등을 통해 보호와 지원
- ⇒ 생산요소투입형 성장, 정부 및 재벌주도 성장, 수출주도형 성장
- 그러나, '90년대 이후 전통제조업 부문 설비투자가 포화상태 (excess capacity)에 이르고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이 한계에 달해 개발연대 요소투입형 성장의 변화가 요구되었음
 - '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이 이를 반영
 - * 잠재성장률 추이(%) : 7.8('80년대) → 6.6('90년대 전반) → 6.0('90년대 후반) → 5.3(현재)
- 현재 우리경제는 과거 노동력, 자본 등 요소투입위주의 요소투입증가형에서 투입 요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선진국형인 총요소생산성 증가형으로 성장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음
 - 이는 요소투입 증가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 분업구조의 재편에 기인
- 따라서,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성장패러다임 전환기에 어떻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인가 임

2. 총요소생산성 증대가 앞으로의 과제

-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인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시장개혁, 각 부문의 대외개방을 통한 global standards의 수용이 필요
- 기술혁신은 IT, BT, NT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문제와 전통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모두 포괄
 -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적자원 양성 및 기초기술개발지원 등 인프라 구축 필요
- 시장개혁은 투명경영과 공정경쟁을 위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임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시장경쟁의 활성화 및 공정성 제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장규칙을 만들고 고치며 지키는 것이 시장개혁
 -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성장동력산업이 시장에서 발굴·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보장
-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대외개방 분야의 확대와 global standards의 수용도 긴요
 - 교역대상인 제조업분야보다 교육, 보건·의료, 법률 등 서비스 분야와 농업이 상대적으로 덜 개방된 분야
 - 경쟁의 미흡으로 생산성 향상이 저조
 - 외국인 투자환경, 부정부패 방지, 노사문화 등에서 global standards의 수용이 시급

II. 시장경제제도의 원리와 한계

- 시장경제시스템은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자원배분제도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제도
 - 전통이나 관습, 권위에 의한 명령, 그리고 정부에 의한 계획 경제제도에 비하여 그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음
 - 지난 세기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경쟁하였으나 '90년 소련 및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이들 나라들이 대부분 시장경제로 전환하였고, 오늘날 선진국들도 모두 시장경제를 채택
 - 가격신호(price signal)를 통해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제주체들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건실한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기여
- 그러나 이러한 시장경제도 타고난 불완전성, 미성숙성, 이익집단의 출현 등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음
 - 시장경제제도는 역사적으로 계속 진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 Friedrich A. Hayek(오스트리아 경제학자) : “여러가지 시장제도 자체의 문제나 시장제도 밖의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제도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며, 시장경제도 발전하는 것”
 - 시장제도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참여자들은 집단주의적 경향을 보임
 - 다수의 이익집단이 발생하여 정치와 경제의 영역을 넘나들며 시장을 교란
 - 경영비용(management cost)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경영비용뿐만 아니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도 발생
 - 시장 스스로의 힘으로는 시장질서를 만들거나 유지할 수도 없어 누군가 권위있는 자가 이 제도를 확립하고 보호해야 하는 문제(비자율성)

-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하였을 때 시장 안에서 경제력이 집중되어 가는 경향 →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경제주체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 나아가 시장외적 지배력까지 행사할 가능성
 - 시장경제제도가 확립되어도 공공재와 같이 시장에서 가격신호에 의해 자원배분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음(불완전성)
 - 시장경제 수준이 서로 다른 나라간의 경제거래와 협력이 보호무역이나 산업지원과 같이 자유시장경쟁이 아닌 정치적 논리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시장경제의 한계로부터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등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이 발생
-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시장가격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 * 예) ■ 외부효과 : 기초과학 R&D, 환경(공장폐수, 자동차 배기가스)
 - 공공재 : 국방, 치안, SOC → 비배제성(무임승차가 가능), 비경합성(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음)
 - 정보의 비대칭성 : 보험업자와 가입자, 건강식품업자와 소비자, 중고차 seller와 buyer
 -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
 - 정부는 국방, 치안, SOC, 복지 등의 공공재를 공급하고 독과점 규제, 환경규제, 보건규제, 소비자권익보호 등 시장의 실패 보정기능 수행
 - 그러나 정부개입이 과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정부가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가 발생하기도 함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제도를 대체할 만한 자원 배분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제도는 인류가 고안한 제도 중 가장 훌륭한 제도로 간주

□ 경쟁은 기업을 변화와 혁신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

- 21세기는 지식기반의 경제사회로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시장권에 속하는 범세계적 경쟁이 많은 부문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경쟁의 심화와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전망
- 특히 “오늘날 경쟁은 신생산방법, 신시장, 신조직을 창출하는 혁신경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연구개발에서 생산, 유통에 이르는 경영시스템간의 경쟁”이 됨(오마에겐이치, '자본주의의 시스템간 경쟁')

□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주도 능력의 개발이 필수적

- 기업의 경쟁력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시장경제에서 생산, 고용, 투자의 주체인 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 특히 대외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의 입장에선 세계 각국 기업들과의 초국적인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서 혁신주도형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긴요

□ 물론 이러한 경쟁력 제고와 혁신의 주체는 개별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

-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기반 제고를 위한 시장경제 질서의 정착 및 선진화
- 혁신을 위한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촉발·지원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환경의 조성 등

- 경쟁정책은 시장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도모
 - 시장경제체제가 효율적인 이유는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
 - 자유경쟁은 “시장에서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유”라는 他者危害의 原則(harm principle)에 토대함
 - * harm principle은 “판단력을 갖춘 성인이라면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설령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불리한 것일지라도 자기가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한 J.S.Mill의 자유론(1859)에 근거
- 경쟁정책도 harm principle에 바탕하여 시장에서 경쟁자, 소비자, 소액주주 등 타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보장하려는 것
 - * 시장경쟁에서 harm principle에 위배되어 타자에게 해가되는 경우의 예로는 과도한 경쟁제한적인 규제, 기업집단과 독립 중소·중견기업간의 불공정한 경쟁, 소비자주권의 침해, 소액주주권의 침해 등을 들 수 있음
- 공정위가 추구하는 시장개혁도 harm principle에 위배되지 않도록 경영의 투명성과 시장거래의 공정성을 높여 시장의 자유경쟁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
 - 이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이를 통해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하자는 것
 - 그 결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
- ⇒ 따라서 공정거래제도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자유경쟁기능의 활성화 및 공정한 경쟁 기반을 제공하는 지원제도로 이해할 필요
- 투명경영과 공정경쟁 시장을 위한 공정위의 4가지 역할
 - ① 경쟁정책(competition promotion policy)
 - ② 대기업집단정책(chaebol policy)
 - ③ 중소기업경쟁기반조성정책(subcontract policy)
 - ④ 소비자권익보호정책(consumer policy)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골간은 경쟁의 원칙이 경제 운용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 즉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제한적인 제도를 혁파하고 시장원리, 즉 경쟁의 원리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 경쟁이 촉진되면 그만큼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발굴되고 국민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시장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97 경제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기업경영의 불투명성,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력 확장과 선단식 경영, 그에 따른 시장의 자유공정경쟁 왜곡 등 한국경제에 누적된 他者危害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것임
- 지난해 12.30 확정■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할 시장, 기업 집단, 기업에 관한 정책의 청사진
- 공정위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할 것임

□ 아울러 경쟁촉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26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규제개혁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여건이 마련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각 부문에서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투명성 부족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Korea Discount도 해소될 것임

(1) 경쟁제한 규제의 획기적 개선

-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규제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특정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어 규제의 내용이 제한적이며 자의적인 경우가 많음
- 그동안 공정위는 경쟁적 시장구조의 정착을 위해 시장진입제한, 가격제한, 영업활동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적 정부규제의 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특히, '99.2월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전문자격사 보수 기준 등 20개 카르텔을 정비
 - (사례) ■ 항공, 정유, 주류, 금융, 시내·국제전화, 건설, 여객, 물류 및
 주요 입출에 대해 경쟁제한 도입 및 요금자유화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보수카르텔 폐지
 ■ 창업, 공장설립·취득규제개선 등을 통해 시장진입 촉진
- 그러나 아직도 경쟁제한적인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규제 및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상당수 잔존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일자리창출에도 부정적

(예시)

- 증권사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 금지제도 : 증권수수료의 고객간 할인을 원칙적으로 금지 → 증권사간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 :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개설 가능 → 영리자본 참여를 방해하여 의료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
- 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 독점대행제도 : KOBACO가 TV 및 라디오 방송국들의 광고시간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 → 방송사간 광고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원천봉쇄
- 단체수익계약제도 : 공공기관이 단체수익계약물품을 구매시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수익계약 방식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 대기업의 사업활동 제한 및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과다보호

- 현재 공정위는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추진과정 등에서 발굴한 152개의 법령상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
 - 특히, 서비스산업 규제(112건)는 범정부차원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에 따라 23개 서비스 산업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에 적극 참여하여 개선 추진 중
 - 비서비스산업 규제(40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를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 또한, 타 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63조의 협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

(2)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성 제고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된 후에 행태규제를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결합심사 등을 통해 사전에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독과점 폐해의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임
- 동시에 기업결합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안전지대(Safety Zone)를 설정
 -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

(3) 카르텔 차단

-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입히는 경쟁당국 제1의 적임
 - 경영혁신, 기술혁신을 저해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창조적으로 경쟁하는 기업가 정신을 훼손
- 카르텔 참여 유인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여 카르텔 억지력을 제고
- 아울러 카르텔 적발력을 높이기 위해 면책제도(Leniency Program) 운영을 통해 내부자 신고와 협력을 유도
 -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법 제22조의2)

(1)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 제공 확대

- ☐ 그간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경영 관행과 인식의 개선은 아직 미흡
 - 특히 개별기업 이외에 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긴요하며, 지배주주 등 실질적인 그룹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큼
 -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 및 기업집단에 있어서 지배주주, 주주, 이사회, 이해관계자간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발전되어야 함
- ☐ 이를 위해 기업집단 계열 비상장■비등록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에 중대 변경이 있는 경우 공시 의무화
- ☐ 또한 총수의 그룹지배를 보좌하는 구조본 등 그룹운영조직의 기능■비용분담 내역의 공개를 유도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타회사 주식보유한도를 정한 제도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집단 소속사의 계열사 등 「타회사주식보유한도제」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of other domestic companies)임
 - 이는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형성함으로써 계열사 및 계열사 지분확대 등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임
- ☐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개선되고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그 기본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하려고 함

-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졸업기준을 마련할 계획

※ 졸업기준(안)

- 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 지주회사에 속한 회사
- 계열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일정수(예: 5개) 이하인 집단
- 소유■지배과리도가 낮은 기업집단

★ 부채비율에 의한 졸업제는 한시적으로 운영

-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상시적 기업구조조정과 창업을 지원할 것임

-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 등 2003. 3월말로 시한만료된 구조조정 관련 출자 예외 인정
- 신산업분야의 예외인정요건 완화 및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예외조항의 악용방지방안 마련

- 3년후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동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

- 참고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이 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동 제도는 기업의 타회사 주식취득만을 제한하므로 기업투자나 경영활동을 제한하지는 않음

- KDI의 1998~2003년 기간동안 투자와 출자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세계 여러나라들이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회사법,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중

- 일본은 재벌해체로 우리와 같은 재벌문제가 없음에도 '77년에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여 25년동안이나 운영

※ 지난 2002.5월 동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안전판으로서 '사업지배력이 과도집중되는 회사의 설립 금지' 제도를 신설

(3)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 자산규모 2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허용범위를 현행 30%에서 2006.4.1일부터 3년동안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
 - 계열금융사가 고객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문제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취득자체를 엄격히 제한
 - 2002년에 적대적 M&A 등을 우려하여 30%까지 의결권을 부여하였지만, 금융기관의 고객자금으로 그룹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확장하는 문제가 있어 금융시장의 발달과 함께 이를 금지할 필요
 - 다만, 국내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측면과 제도 변화에 기업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4) 부당내부거래 지속 감시

- 부당내부거래는 기업집단체열사와 기업집단 밖의 독립기업간에 불공정경쟁을 초래함
 - 즉, 기업집단 계열사끼리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참호효과(entrenchment effect)를 가져와 중소■중견기업의 발전기회를 막고 경제효율을 저해함
 - 또한 시현빈곤 기업에 자금주사 유별, 시현하곤 기업의 중반 부실화 등으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system risk를 야기할 수 있음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이행 여부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 대규모 직권조사는 지양하되 구체적 혐의가 있는 그룹에 대한 선별적 직권조사 및 수시조사를 병행
-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교차지원 등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을 추진

- 중소기업이 고용의 86%를 차지하고, 제조 및 건설부문 중소기업 매출액의 절반정도가 하도급거래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고용창출을 위한 관건임
-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 제조업과 건설업에 국한되어 있는 법적용 분야를 운송 등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 (전체사업자수 대비 법 적용대상사업자수 비율: 16% → 77%)
 -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
 - * 현금성결제 촉진을 위해 현금성 결제가 100%이고 범위반이 없는 업체에 대해 조사면제■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등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대상 확대: 3만5천개('03) → 4만개('04) → 7만개('07)
 - 대기업이 원가상승요인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업종별로 완제품가격, 납품단가 변동율 등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
-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부당 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노력을 강화할 계획
-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도 강화

- ☐ 소비자 권익보호장치는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과 압력을 통한 시장경쟁의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

(1)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 ☐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정보고시제도'를 보완할 계획
 - 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광고주가 객관적 자료를 실증하도록 하는 광고실증제도를 강화할 것임

(2)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장치 강화

- ☐ 전자상거래 분야의 선불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결제대금 예치제도(escrow) 도입 추진 등 소비자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escrow :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 ☐ 다단계판매분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업자의 중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신용평가 등급 등) 공개를 유도
- ☐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자동차정비, 휴대폰매매 등 10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작■보급하고,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직원교육 등 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할 것임

(3) 소비자피해 사후구제제도 확충

- ☐ 외국에 비해 도입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의 소비자불만처리시스템 도입확대를 유도
- ☐ '03년 말에 구성된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
- ☐ 아울러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구제장치로 공익소송, 단체소송,

집단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